

이의신청 결과 통보서(불인정)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보건복지부장관 (인)

(이의 신청인) 귀하

이의신청 내용				
신청인	구조행위자와의 관계			
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구조 행위자 (심사 대상)	구조행위일		년	월 일
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
이의신청 결과				
인정기관	보건복지부	심사위원회	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(년 월 일)	
인 정 결 과	불인정			
불인정사유	[]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 [] 구조행위자의 생명·신체상의 위험성 부족 [] 위해 상황의 급박성 부족 [] 구조대상자가 구조행위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 해당 []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 [] 구조행위와 부상·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성립 []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 []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에 미해당			

안내사항

-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 -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-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 -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